

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44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8월 7일, 송재혁 의원 외 36명
- 나. 회부일자: 2021년 8월 18일
- 다. 상정일자: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9월 6일 상정·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송재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시장이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당연직 위원 중 하나를 ‘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’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린뉴딜의 위상의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근거 조를 수정함(안 제5조).

- 위원회의 위원 중 하나를 기존 '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'에서 '시 그린 뉴딜 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'으로 변경함(안 제9조제3항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(이하 “그린뉴딜위원회”)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‘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’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그린뉴딜의 위상의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그린뉴딜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그린뉴딜 관련 시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〈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의 근거, 목적 및 구성 현황〉

- 근거: 「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」 제8조
 - 목적: 그린뉴딜 시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
 -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-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지원, 관련 조례 및 제도에 관한 사항
 -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, 교육·홍보,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
 - 구성: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
 - 시의원, 관련 부서의 장, 그린뉴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
- 안 제9조제3항제2호와 같이 그린뉴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기존의 ‘관련 부서의 장’에서 ‘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’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또한, 에너지정책위원회, 택시정책위원회, 청계천시민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서울시의 주요 위원회들도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을 ‘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’으로 규정하고 있고 ‘그린뉴딜’의 위상이 그 어떤 정책들에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견 없음.

〈서울시 주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현황〉

연번	위원회명	조례명	조항 및 내용
1	에너지정책위원회	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	제10조제2항제1호 · 기후환경본부장,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·본부·국장
2	택시정책위원회	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	제14조제1항제3호 ·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, 국장
3	청계천시민위원회	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	제12조제4항제1호 · 청계천 업무 관련 실·국·본부장
4	적극행정위원회	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	제9조제3항3호 ·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3급 이상의 실·본부·국장급 공무원
5	서울민주주의위원회	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	제9조제4항제3호 · 예산, 협치, 혁신 등 소관 실·본부·국장 또는 기획관
6	청년정책조정위원회	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	제9조제4항 · 당연직 위원은 혁신·경제·주택·복지·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”를 “제2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

제8조의 제목 “(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등)”을 “(위원회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 중 “부서의 장”을 “실·본부·국의 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(생략)</p> <p>② 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그린뉴딜의 기본 원칙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뉴딜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제2조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조달</u>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시장은 그린뉴딜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시 그린뉴딜 관련 <u>부서의 장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실·본부·국의 장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